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의4서식] <개정 2018. 11. 27.>

오염토양정화(변경)계획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10일

제출인	성명(대표자명)	생년월일
	상호(명칭)	
	주소(사업장소재지)	전화번호

오염현황	오염물질 및 농도(오염물질의 종류, 최고·최저 농도)
	오염토양의 양(㎥)
	오염현장 소재지
	오염사유

정화계획	정화방법
	정화업자 (대표자 : 연락처 :)
	정화소요기간
	정화검증기관(토양관련전문기관) (대표자 : 연락처 :)
	정화토양 처리계획(오염토양을 굴토하여 처리할 경우)

변경사항	변경 전
	변경 후
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5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에 따라 오염토양정화(변경)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최초계획의 경우 가.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1부 나. 정화시설 설치·운영계획서 다.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라.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2. 변경 계획의 경우 :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

처리절차

계획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승인
제출인		시·군·구		시·군·구		시·군·구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